

제76조 가산세



제76조의 요약

- 일반무신고·무기장가산세 : 세액(토지법인세는 제외)×20%와 수입×1만분의 7 중 큰 금액
-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 세액×40%와 수입×1만분의 14 중 큰 금액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10%
- 초과환급가산세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10%
- 부당초과환급가산세 : 부당초과환급세액×40%
- 일반미납부가가산세 : 미납액×하루 0.03%×미납기간 날지수(=연 10.95%)
- 초과환급가산세 : 초과환급세액×초과날짜수(환급일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하루당 0.03%
- 원천징수납부불성실·미납부가산세 : 미납부세액×0.03%×미납일지수×미납·미달세액의 10% 한도와 (미납·미달세액의 5%) 중 큰 금액
- 투명지출증빙(신용카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미입수 및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 가산세 : 미입수 및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거래금액×2%
- 주식·지분변동상황 미제출·불성실기재가산세 : 해당 미제출 등 주식액면가×2%(산출세액 없어도 적용)
-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가산세 : 지급명세서불분명 및 미제출금액×2%(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
-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1월 이내 제출시 50% 경감)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발급가산세 : 의무불이행시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 (법인 이외 단체·개인도 포함) 허위발급시 사실과 다른 금액의 2%
-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건당 5천원 이상) 발급거부가산세 :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가액의 5%,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시 0.5%

●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②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그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5

③ 삭 제 (2001. 12. 31)

④ 삭 제 (2008. 12. 26)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0. 12. 30 개정)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0. 12. 30 개정)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0. 12. 30 개정)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2010. 12. 30 개정)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다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다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원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⑪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2010. 12. 30 개정)

⑫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2010. 12. 30 개정)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돌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1. 가산세

1. 본 조의 개요

가산세란 조세법상 규정된 제반 납세의무의 성실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조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 조와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한 가산세의 유형과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산세의 유형과 과세요건 ▣

구분	가산세종류	관련 조문	가산세과세요건	가산세액의 계산
신고·납부·징수 불이행	무신고(비영리 내국법인은 제외) 가산세 (국기법 §47의2 ①)	제60조 제72조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무기장 가산세와 동시 적용시 큰 금액을 적용함.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과소·초과환급 가산세 (국기법 §47의3 ①, §47의4)	제60조 제72조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	• 과소·초과환급신고액×10%

신고·납부·징수불이행	부당과소·무신고 등 가산세 (국기법 §47의2 ②, §47의3 ②)	제60조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부당과소·무신고세액×40%와 수입금액×0.14% 중 큰 금액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국기법 §47의5)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또는 초과환급받은 때	• 미납부·과소납부(초과 환급)세액×미납기간 등 일수×0.03%
	무기장가산세 (제1항)	제63조 제64조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때	• 산출세액×20%와 수입금액×0.07% 중 큰 금액(산출세액 없는 경우 수입금액×0.01%)
	원천징수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제2항)	제73조	적법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미납부하였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① 미납·미달세액×0.03%×미납일자수≤미납·미달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미달세액의 5% ①와 ② 중 큰 금액으로 함.
	결합재무제표 등 미제출가산세(제4항)	제115조	적법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신고 및 경정·결정한 산출세액 × $\frac{2}{100}$ 와 수입금액 × $\frac{8}{100,000}$ 중 큰 금액
납세협력의무불이행	투명지출증빙불비가산세(제5항)	제116조 제2항	사업거래시 투명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 미수취 및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하는 경우	미수취 및 사실과 다른 증빙거래의 총 금액 × $\frac{2}{10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및 누락제출가산세(제6항)	제119조	적절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적법미제출·기재누락 및 주식변동상황이 누락제출된 경우	미제출·누락제출 주식액면금액 × $\frac{2}{100}$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제7항)	제120조	지급명세서를 규정된 소정 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불분명 지급금액 × $\frac{2}{100}$

납 세 협 력 의 무 불 이 행	지급명세서 불 명가산세 (제7항, 제8항)	제120조	적법기간내 제출 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소 득신고이후 1년내 에 한함)	불분명한 지급명세서 지급금액× $\frac{2}{100}$
	계산서작성· 교부 제출관련 불성실가산세 (제9항)	제121조	계산서미교부, 사 실과 다름, 매출매 입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 미제 출·불성실기재	공급가액× $\frac{1}{100}$
	기부금영수불 성실발급가산 세(제10항)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불이행가산세 : 작성·보관불이행 금액의 0.2% • 허위발급가산세 : 사실과 다른 금액의 2% (* 법인 이외 단체, 개인도 포함)	
	신용카드매출 전표발급 불성 실가산세 (제11항)	제117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 게 발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 게 발급한 금액×5%≥5,000원
	현금영수증가 맹 및 발급불 성실가산세 (제12항)	제117조 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에 가입하지 않거 나 현금영수증 건 당 5천원 이상 거 래금액에 대해 발 급을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 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시 미가 맹기간분 수입금액×1%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5,000 원

2. 가산세의 개념과 유형

1) 가산세의 개념

① 납세의무성실이행 목적

가산세는 본세에 추가하여 붙는 벌과금적 성격인데,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정비율이 정해지므로 세금의 일종이다. 단지 특정신고납부요건이나 의무를 지키지 못하거나 위반함에 따른 세금이므로 형평과세나 실질 과세개념 등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세법상 의무의 아주 작은 것만 위배해도 가산세금액은 아주 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법상 각종 의무를 당해 법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행정상 제재의 일종으로서 본 세에 가산하여 부과징수되는 일정한 금액이 가산세인데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4. “가산세”(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가산세의 법적 성질

상기의 국세기본법 제47조는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산세는 법인세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현행의 해석이다. 가산세는 따라서 독립된 세목이 아니고 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이 법인세

액에 가산되어 법인세의 명목으로 징수되는 것이고 본 법에서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의 가산세가 법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되더라도 그 가산세의 산출근거는 법인세 자체와는 전혀 다른 계산기준과 세율에 의하고 있어 양자의 본질적 차이는 크다. 즉, 법인세 산출세액은 소득금액에 기초를 둔 과세표준금액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비하여 가산세는 세원인 소득에 직접 관계 없는 산출세액·거래금액·미납세액·외형금액 등을 계산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세율도 초과누진세율인 법인세율과는 달리 일정단순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산세는 법인의 과세표준에 세액계산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과세소득과 관계없으며 과세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부과징수되며, 과세표준이 음수(-)로서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부과징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산세가 법인세의 납세의무 있는 자에게만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는 관계없이 법인세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산세는 형식상으로는 법인세로 부과징수될 뿐 실질상으로는 법인세와는 전혀 그 성질이 다르다.

2) 법인세 가산세의 목적별 유형

① 법인세 가산세의 종류

현행의 자진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의 원활한 운용과 성실한 의무이행을 위해 종전의 부과과세제도보다는 무신고법인·과소신고 및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가산세규정이 보다 엄격하다. 이밖에 법인의 사회적 책임과 경리조직의 기장이나 신고능력 등을 감안하여 개인소득세법상의 규정보다 높은 가산세율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성실신고에 의한 신고납세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규정이다.

조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에 각기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세목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서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 관련 가산세는 그 달성하

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법인자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징수 등을 성실히 하도록 하는 무신고 및 무기장가산세(일반·고액), 과소신고가산세(일반·고액) 및 미납부가산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있다. 또한 법인의 납세협력의무를 촉진하여 법인과 거래가 있는 주변의 모든 법인 및 자연인의 소득상황이나 거래내역 등이 세원으로 포착되도록 하는 지급명세서미제출·불분명가산세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투명지출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법인세 가산세의 적용규정시기 및 적용

법인세 가산세는 1990년 12월 31일자로 계약서부분 미제출가산세가 삭제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98년 12월 28일자로 투명증빙불비가산세가 신설되었다. 이밖에 가산세계산을 위한 적용세율이 상당히 강화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의 적용시기는 본 법 개정의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명증빙불비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차대조표 공고 불이행가산세는 2002년 최초 신고분(즉 2001사업연도분)부터 폐지됐다.

3. 가산세와 기타 행정제재와의 차이

① 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

가산세는 세법에 의한 각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벌로서 제재를 과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한 각 세법이 되며 따라서 법인세가산세의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인 반면,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 가산금의 법적 근거는 국세징수법이 된다. 이밖에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상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인 반면 가산세는 국가재정권에 근거하여 세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제재로서 조세

의 형식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가산세는 요건불비·불성실의 중과세율 개념이고, 가산금은 특정납부기한준수 및 관련 지연납부의 이자액 개념인데 부과하는 이론적 배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② 과태료와 가산세와의 차이

가산세는 법인세의 일종으로서 법인세의 부과징수절차에 따르는 조세이고 과태료는 법률상·행정상·직무상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제재의 성질에 있어서 가산세와 과태료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제재로서 과태료적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내용상의 성질일 뿐 형식상은 법인세의 일종이다. 과태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법상 민사질서법에 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상 강제되는 벌과금인 점에서 다르다.

③ 조세벌과 가산세의 차이

가산세는 국가재정권에 근거해서 세금형식으로 부과하는데 반하여 조세벌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해서 형벌형식으로 과하는 점이 다른데 조세벌은 세법의 실효성이나 의무이행확보를 목적으로 과하는 제재로서 가산세와 조세벌은 제재를 가하는 목적에 있어서 공통점은 있다. 만일 동일한 의무위반사실에 대하여 가산세와 조세벌을 모두 과한다면 이중벌제한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으나, 가산세는 조세형식으로 부과되고 조세벌은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형식으로 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밖에 가산세는 조세벌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에 있어서 행정벌적 성격이 있으나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세부과시에는 고의·과실 등의 책임조건·행위자의 책임능력·법률의 착오무무 등을 고려함이 없이 정당한 의무해태의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만을 확인하여 일반조세의 부과절차로 과세한다.

II. 신고·납부 및 징수의무 불이행가산세

1. 무신고와 무기장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 제76조제1항)

1) 무신고·무기장의 의미

(1)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개념

국세기본법 및 본 법의 무신고 및 무기장가산세는 본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본 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불이행한 때에 적용하는 가산세이다. 무기장이나 무신고의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보아 동일한 가산세율이나 가산세계산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무기장과 무신고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 중 하나만 적용한다.

(2)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

① 적법신고요건의 흠결

세법에서 의미하는 무신고는 신고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개념뿐 아니라 세법요건대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도 포괄한다. 본 법 제60조는 법인의 과세소득 신고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필수적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은 경우도 무신고요, 일정기간요건(결산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내에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도 무신고이며, 일정필수서류(신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계산서 혹은 결손금처리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등 5대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빠고 제출되어도 무신고로 본다. 필수적 서류 중 한가지라도 빠지면 무신고가 된다는 뜻인데 착오나 오류로 일부기재가 잘못된 것은 문제 없으나 완전히 허위인 것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신고의 범주에 포함된다.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 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2010. 1. 1 개정)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⑤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3항 및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2011. 5. 2 개정)
- ⑨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신고기한연장시의 무신고여부와 판정 방법

국세기본법 제6조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연장신청할 수 있는 규정인데 연장승인을 받은 법인은 연장된 신고기한까지를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하여 무신고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나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한 과소신고여부나 미납부기간도 연장된 신고기한을 과세표준의 적법신고기한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요건

본 법 제112조는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방식으로 이를 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호는 법 제112조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뿐 아니라, 비치 및 기장된 장부가 있다 하여도 기장정도가 복식부기에 의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는 기장능력이 약하므로 상업장부가 없음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업장부비치·기장의무의 적법 이행여부나 무기장여부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판단함이 일반적이는데, 사업연도 진행중에 증빙을 갖추고 작성시일 정도를 지연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무기장으로 볼 수 없다. 즉, 무기장은 적법신고기한까지 기다린 후 그 후에도 장부·증빙이 불비한 경우를 말한다.

2) 무신고·무기장가산세액의 계산

① 가산세액의 계산산식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는 모두 다음의 계산산식 중 큰 금액이 산출되

는 것으로 한다.

◎ 무신고·무기장 가산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20/100과 수입금액×7/10,000 중 큰 금액

◎ 부당무신고시 가산세

=산출세액×40/100과 수입금액×14/10,000 중 큰 금액

② 부당무신고금액의 범위

무신고의 경우라도 부당무신고시에는 신고내역의 경중에 따라 차등부과하는데 부당무신고금액에는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종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으로서 다음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이종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

무기장가산세의 계산기준의 하나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결정 산출세액은 법인의 자진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 만인데 법인이 본 법 제60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면 법인의 자진신고산출세액이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으로 적용함이 당연하다.

본 법 제60조에 의한 신고는 하였으나 본 법 제66조에 의한 관할세무서장 결정·경정의 일정 사유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법인의 자진신고 산출세액과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한 산출세액결정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을 적용한다. 이 밖에 본 법 제76조 규정상의 제반 가산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인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결정 수입금액

상기 산식상의 가산세 계산기준의 하나는 수입금액인데 산출세액과는 달리 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총 매출액이라고 보며, 수입금액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수입금액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가산세액 계산상 세액기준외에도 수입금액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당기순이익은 있으나 그 세액이 수입금액에 비하여 과소한 법인이나 수입금액은 있으나 결손금이 발생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산출세액기준만을 적용하면 무신고나 무기장가산세가 산출되지 않거나 과소하여 기장이나 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수입금액기준도 적용되도록 하여 성실한 기장과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3) 무신고·무기장가산세 적용배제

① 법인세 전액 비과세 및 면제

법인이 신고하지 않거나 무기장 상태라 할지라도 본 법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거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본 항의 무신고 가산세·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다음의 규칙이 정하고 있다. 조세협약상 전액 비과세되는 외국법인 해운항공업 수입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60조 【가산세의 적용】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3. 5 개정)

② 과세되는 일부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고기장

상기 시행규칙은 법인세가 전액 과세되지 않는 수입금액이 있는 법인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된 소득은 아니라 하더라도 과세되는 소득이 일부라도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으로 보지 않아 무신고·무기장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수입만 있지만 이밖에 국고보조금수입·이자수입·잡수입 등의 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은 신고와 기장의무가 있다. 즉 불이행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고보조금수입·이자수입·잡수입 등이 있다고 무조건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러한 소득이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않고 과세되는 경우 그러한 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산림개발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데 산림개발소득은 면제되더라도 여유자금을 은행에 일시 보관하여 발생하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 각종 채권·증권의 이자소득은 산림개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이 된다. 이러한 과세소득이 일부라도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무기장 가산세 적용 배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된다.

④ 무신고·무기장가산세 적용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안됨

당연한 말인데, 무신고 혹은 무기장이라면 과소신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전체에 대한 무기장·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된다.

⑤ 신고기한 경과후 1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50% 감면

법인세 무신고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가산세·소과원금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1)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률

- ① $\text{과소신고세액} \times 10\%$, $\text{부당과소는 과소세액} \times 40\%$ 와 $\text{수입} \times 14/10,000$ 중 큰 금액의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본 법 제60조규정에 의거 적법히 신고하여야 할 법에 정확히 들어 맞는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데 과소신고내역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부당과소신고의 경우는 그 과소 미달신고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그 금액이 미달 신고금액의 14/10,00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금액,

즉 수입누락금액의 14/10,000이 최소 가산세로 부과된다.

상기 외의 일반과소신고 경우에는 과소미달신고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일반과소신고 등의 경우 세액자체가 없거나 결손상태라면 가산세는 없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 12. 27 개정)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② 과소신고가산세율

-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 산출세액×40%와 수입×1만분의 14 중 큰 금액
- ◎ 일반미달신고 가산세율 : 산출세액×10%

2) 과소신고소득의 계산

① 과소신고소득 총 금액의 계산산식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서 법인이 실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총 과소신고금액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 ◎ 총 과소신고금액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및 경정한 과세표준금액 - 당초 신고과세표준금액

여기서 신고과세표준금액이란 신고서상 기재한 과세표준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만일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계산된 적법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② 적법한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과소신고과세표준이란 법인이 세법적용을 엄밀히 하였을 경우 계산되는 소득과 법인이 실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데, 법인의 자진신고금액은 있으므로 엄밀히 세법을 적용한 이상적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여 이들간의 차액이 바로 과소신고과세표준이다. 여기서 엄밀한 이상적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서는 본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모든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등 모든 기간손익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

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① 초과환급세액×10%, 부당초과환급세액×40%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납부할 세액을 법인이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급신고한 세액이나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③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② 초과환급신고세액 계산

초과환급신고세액은 법인이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데, 초과환급신고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환급신고한 세액에 부당하게 신고한 초과환급신고세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① 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2010. 2. 18 개정)
- ② 법 제4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 ③ 법 제4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4항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4)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①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미납부·초과환급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1) 미납부가산세의 의의

① 적용요건

미납부가산세는 본 법 제63조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과 본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자진신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무납부라 함),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미달납부라 함) 경우, 그리고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에 부과된다. 무납부와 미달납부 그리고 초과환급을 일괄하여 미납부라 하는데 중간예납세액을 미납부한 경우와 본신고납부세액을 미납부한 경우에 모두 본 호의 미납부·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한다.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 미납부액(무납부액·미달세액)에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을 감안한다. 미납부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일수×하루 0.03%로 계산하며,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초과환급액의 초과날짜수×하루 0.03%로 초과환급가산세를 계산한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010. 1. 1 개정)

② 미납부세액의 계산

미납부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인데 여기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결정세액을 말하고 납부한 세액은 기한내 납부세액을 의미한다.

미납부세액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미납부세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결정산출세액－기한내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본 법 제6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분납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신고기한내의 납부할 세액과 신고기한 경과 후의 납부할 세액으로 구분하여 미납부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미납부·초과환급가산세액의 계산

① 미납부가산세액의 계산산식

미납부가산세는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적용하는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3으로 연 10.95%이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미납부기간계산 및 미납부가산세계산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당 1만분의 3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미납부가산세는 미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미납부가산세도 커진다. 미납기간은 적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이다.

◎ 미납부·초과환급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 × 미납부기간 · 고지기간(환급기간) × 3/10,000(연 10.95%)

3)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

(1)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①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적용

미납부가산세는 납부불성실 법인에게 적용하는 가산세이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미납액이 있는 한 무신고가산세외에도 미납부가산세가 별도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신고하더라도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초과환급받는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②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 적용시

향후 지급이자 손금부인됨에 따라 추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2)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① 법인세 비과세 전액면제

미납부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납부한 경우만 적용하므로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은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경정이 취소되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과소신고소득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도 당해 사업연도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한다.

② 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미납부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아닌 수시부과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을 미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데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인 반기 중간예납세액과 적법 온기 신고납부세액을 미납부한 경우에만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③ 법인세법 이외의 추징세의 미납부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법상 가산세이므로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의 추징과 함께 징수한다. 즉,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추징시만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고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법상의 가산세와는 다른 것이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을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과세전적부심사 지연결정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청구일로부터 30일)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원천징수납부의무불이행 (법 제76조제2항)

①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의 개념과 요건

본 항의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 미납부한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이므로 일단 제대로 원천징수세액을 기한내에 미납부하였다면 소득 수취자로부터 실제로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를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만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적용범위

본 항의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는 본 법 제73조에 의한 법상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법인에게 적용하는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의 적용대상자는 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는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법인세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되며,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이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만을 징수한다. 그러나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법인세 본세도 징수한다.

③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액의 계산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는 기한내 미납부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①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②(미납세액×0.03×미납기간일자수≤미납·미달세액의 10% 한도)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III. 납세역력의무불이행가산세

1. 기업집단 결합채무계표 등 미제출가산세

(2008. 12. 26 삭제됨)

2. 지출증빙 미수취 및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가산세 2%

(법 제76조제5항)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상대방과의 과표양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투명지출증빙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면 2000년부터 미수취금액의 10%(현재는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였었다.

이는 상대방거래자의 매출부가세 해당액이라고 판단되며, 지출증빙없으면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10%가 탈루되므로 이를 대신 납부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각종 계산서 등 과세자료의 미교부·불성실가산세가 거래금액의 1~2%인 점을 감안하여 2001년분부터는 2%로 인하되었고, 2010년부터는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미수취와 동일하게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지출증빙수취의무 규정은 본 법 제116조에서 자세히 해설해기한다.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① 투명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 제외 사업자

영 제158조제1항각호의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은 재화·용역거래시 지출증빙서류수취해야 하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익·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사업 관련된 부분은 가산세를 징수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③ 법 제7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①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②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및 중복적용배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는 지출증빙미수취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그 금액은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였으나 2001년부터 2%로 인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접대비는 1건당 1만원 초과 지출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의 투명증빙 미입수시에는 손금불산입되는데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접대비의

지출증빙없이 손금불산입되면 세액의 24(22%+2%)는 뜻이 되므로 가산세 2%를 중복적용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④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 누락가산세

(법 제76조제6항)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도입의의

본 항이 1990년 12월 31일 신설되기 전까지도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첨부되어 왔으나 흠결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이 관할세무서의 보정요구대상이었다.

그러나 주식거래가 빈번해지고 거래금액도 커질 뿐 아니라 주식거래관계도 상장법인인 경우는 불특정다수간의 경쟁적 거래가 대부분이지만,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변칙거래 등의 특징을 보여왔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 상속세법상의 상속·증여문제,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간주되는 문제 등이 발생되어 왔는데 이런 거래로 인한 세원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항 규정을 신설하였다.

본 항에 의한 가산세 적용대상은 법인세의 적법신고기한내에 상장·코스닥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등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의 주식등변동상황을 누락하여 기재된 것을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등 모두에 적용된다.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적용 사유

본 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i) 주권상장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

함)가 아니어야 하며 ii) 과세표준의 적법신고기한내에 미제출되거나 제출되더라도 진실의 주식등변동상황이 누락된 경우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제출기한 및 제출내용에 관한 본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제1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2009. 2. 4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2009. 2. 4 개정)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2009. 2. 4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 법 제119조 해설 참조

③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가산세율

본 항의 가산세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

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상당액(1억원 한도)이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사업연도 중에 주주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주주 등 변동이 실질적으로 없었다면 미제출되거나 누락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변동신고는 각 사업연도 단위로만 계산한다.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불성실작성 가산세]

$$= \text{미제출} \cdot \text{누락제출} \cdot \text{불분명 주식액면가액} \cdot \text{출자가액} \times \frac{2}{100}$$

④ 미제출·제출누락·불분명의 경우

법인세신고서상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빠지거나 없는 경우가 모든 미제출·제출누락이다.

이밖에 제출내용의 불분명이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미기재·오기·불분명변동사항 확인이 안되는 경우,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을 말한다. 기타 사항으로 확인되면 불분명은 아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10. 2. 18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지급명세서적법제출 불이행가산세 (법 제76조제7항)

1) 지급명세서관련 가산세의 적용요건

① 지급명세서미제출 · 지연제출 · 불분명가산세

본 항의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한 제출시기의 준수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1억원 한도내에서 지급금액 · 불분명지급금액의 2%가 가산세이다.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도 미제출가산세와 동일하게 불분명지급 해당 금액의 2%이다.

②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본 법 제120조 · 제120조의2는 내 · 외국법인 소득금액의 지급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제출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2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준용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제출기한 이후에는 제출하더라도 미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출효력이 없고 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다.

③ 지급명세서제출기한과 미제출가산세의 적용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2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제출여부 · 미제출로 보는 경우를 구분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경우·소득유형	제출기한	미제출로 보는 경우	가산세
일반소득 · 수입(이자 · 배당 · 사업수입 · 기타소득), 근로소득	다음 연도 2월말 1~12월 → 차년 2월 28일	다음 연도 2월 28일 후	지급금액×2%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전산처리 방식 테이프 ·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전산제출이 원칙, 소규모업자는 문서제출도 가능함)	1~12월분 → 다음 연도 2월 말일	다음 연도 2월말일 후에 제출	지급금액×2%

④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는 본 법 제120조에 의해 적법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때에만 적용하는데 정상적으로 제출한 지급명세서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기한인 지급명세서라도 불분명하면 모두 가산세 적용이 된다. 아예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 것이라면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도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를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⑤ 지급명세서불분명의 판단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불분명한 경우’란 결국 제출된 지급명세서상 지급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정부가 실지조사한 결과의 거래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를 말하는데 지급명세서상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당해 소득의 지급사실진위를 확인한 뒤 불명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단순히 문서상으로만 검토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불명자료로 확정하여서는 아니되는데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⑥ 지급명세서불분명의 사례

지급명세서상에 거래상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납세번호가 기재되어도 실지조사 결과 지급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 시행령 제6항제1호의 규정 내용은 거래상대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라면 비록 그 거래상대자가 일견 무자력자이거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하여도 무조건적으로 지급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뜻이고, 단순히 지급명세서상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제출된 지급명세서만으로 실지조사한 결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불분명한 경우로 보므로 정부가 면밀히 검토했다라면 일괄제출된 기타자료에 의하여 그 기재 누락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었다거나, 소정의 제출기한 후에 그 기재누락된 부분이 보완되어 그 지급명세서가 아무런 지장없이 과세자료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2) 지급명세서관련 가산세의 계산방법

(1) 지급명세서제출관련 가산세의 세율과 지급금액

지급명세서미제출 등과 관련된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당해 지급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한다. 즉, 지급금액 자체가 가산세를 적용하는 대상금액이 된다.

①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세율

미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총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한다.

②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 세율

불분명한 분의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로 한다.

(2)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의 적용기간 (법 제76조제8항)

① 결산기말부터 3개월 이내의 적법신고일 지난날부터 1년간

본 항은 지급명세서를 적법기간 혹은 지연제출 기한내에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는 어쨌든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것이므로 일정 기간내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급명세서는 지급자에게 비용으로 될 뿐 아니라 수취자에게 소득으로 귀속될 금액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수취자의 소득세과세도 중요한데 본 항은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지급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적법신고일(법인의 실제 신고일과는 상관없이 그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계산함)로부터 1년 이내에만 한하여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분명이란 뜻은 제출되었어도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과세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오랜 기간동안 지연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금액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까지만 적용한다. 1년이 지나면 설사 소득지급내용 등이 불분명한 것이 있더라도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②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 적용기간의 기산일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는 과세소득과약과 과세자금 확보를 위한 규정이므로 오랫동안 방치될 수도 없고 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1년의 계산도 중요하다. 이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를 소득지급신고일로 하여 이때부터 1년간으로 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⑧ 법 제76조제8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4월 1일부터 차년 3월 31일까지라면 해당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신고일은 3월 이내인 6월 30일까지이다. 이때부터 1년

내 이내니까 6월 30일부터 1년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가 된다.

3) 지급명세서제출관련 가산세의 적용방법

① 소득의 지급행위시의 무조건제출

지급명세서제출관련 가산세는 국세부과에 대한 협력의무의 하나로서 세원확보를 위한 규정인 지급명세서제출의 제반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유무나 당해 지급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명세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과 가산세 적용방법

① 연장사유와 연장제출기한

천재·지변 기타의 특수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데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내에 면제나 연장승인신청을 하면 승인하도록 다음의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②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 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세서관련 가산세 적용기한

상기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본 법 제120조제1항의 적법기한내에 발생한 연장사유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된다. 즉, 기한내에 발생한 연장사유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지급명세서제출기안에 대한 기타의 특례

① 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본 법 제120조의 지급명세서제출시기는 결국 당해 소득의 실제의 지급일이나 지급의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로자의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다음 연도 1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면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다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였다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합병·분할법인 및 해산법인의 지급명세서제출대상금액

지급명세서적법보고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되면 '제출하여야 할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은 합병·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지급금액만으로 하는데 합병·분할등기일이나 해산등기일 이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또는 지급명세서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⑦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

조·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

상기 시행령에서 합병·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지급금액이란 합병·분할등기일이나 해산등기일 이전에 법 제120조에 규정한 지연제출기한이 도래하는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이다.

5. 계산서작성·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법 제76조제9항)

① 계산서불성실·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법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필요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되거나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 또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되거나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 1억원 한도내에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징수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징수된다.

부가가치세법 적용으로 가산세가 부과징수되면 본 법상의 부과징수와 중복되므로 본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세금계산서 교부나 작성,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세법 절차 요건과 가산세 규정이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이 법인세법보다 훨씬 더 엄격함).

② 모든 법인적용, 비영리법인 등 제외

계산서관련 불성실가산세는 과세자료 양성화와 실명거래촉진을 위해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그러나 국가, 지방정부, 수익·비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외국법인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산업분야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영리법인간이라도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이나 사업의 포괄양도 그리고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매매시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계산서 및 합계표의 기재사항 여부**

계산서 미교부·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사실은 분명하다. 기재내용이 잘못된 경우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물거래없이 가공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부분 필수적 기재내용의 사실오류가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6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2011. 6. 3 개정)

⑩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2011. 6. 3 개정)

⑪ 법 제76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1. 6. 3 개정)

④ 계산서·합계표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계산서합계표미제출이나 계산서합계표의 불성실·오류기재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면 계산서미교부 불성실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미교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물론 미교부되었다면 아예 제출될 수도 없다. 그러나 가산세는 미교부 자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⑤ 중도매인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까지는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영세한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 여건을 감안하여 2010. 12. 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계산서 교부 비율이 사업연도별로 일정기준 초과시에만 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장도매인 연도별 계산서 교부 비율 기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5%	60%	65%	70%	75%

계산서 교부비 비율은 총 매출액에서 계산서교부금액을 나누면 된다.

관련 부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부칙 제14조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

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의 비율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시장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2011. 3. 31 개정)

과 세 기 간	비 율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6.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법 제76조제10항)

비영리 내국법인(법인 이외의 단체, 개인 등도 포함)이라도 기부금영수증을 불성실하게 과다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한다.

- ①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1억원 한도)
- ②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 작성·보관 안한 금액×0.2%(1억원 한도)

7.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불성실가산세 (법 제76조제11항)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불성실가산세는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상당 금액이 해당된다.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8. 현금영수증가맹 및 발급불성실가산세 (법 제76조제12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건당 5천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 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시 미가입기간분의 수입금액×0.5%
- ②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 5,000원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⑫ 법 제76조제1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⑬ 법 제76조제1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IV. 국제기본법상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규정

본 조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적용요건, 대상, 가산세의 세율과 계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로서의 가산세부과와 감면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다음의 국제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한다.

관련법령

● 국제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

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개정)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